



# 물질안전보건자료

## (Material Safety Data Sheet)

<b>제품명</b>	<b>Kixx Geartec GL-4 80W-90 (구, Kixx GL-4 80W-90)</b>		
<b>작성부서</b>	<b>최초 작성일자</b>	<b>최종개정일자</b>	<b>개정횟수</b>
윤활유기술개발팀	2012-11-30	2017-10-26	3

###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 제품명 : Kixx Geartec GL-4 80W-90 (구, Kixx GL-4 80W-90)

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권고용도 : 윤활유, 자동차용 기어오일
- 사용상의 제한 : 자료없음

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공급회사명 : GS칼텍스㈜
- 주 소 :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(역삼동)GS타워
-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 : 02-1899-5145
- 담당부서 및 연락처 : GS칼텍스 윤활유기술개발팀(02-1899-5145)

### 2. 유해 위험성

가. 유해 위험성 분류

- 분류되지 않음 (유해하지 않음)

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핀 증류액(CAS 번호 : 64742-54-7)은 EU CLP에 발암성 :

구분 1B(Carc. 1B)로 표시되어 있으나 IP 346 방법에 의해 측정된

DMSO(Dimethyl Sulphoxide) Extract 3% 미만인 경우에는 발암성 : 구분 1B에서 제외됨

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- 그림문자 : 없음
- 신호어 : 없음
- 유해 위험 문구 :  
GHS 기준하에서 유해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음
- 예방조치 문구
  - 예방  
특별한 예방조치 문구가 없음.
  - 대응  
특별한 예방조치 문구가 없음.
  - 저장  
특별한 예방조치 문구가 없음.
  - 폐기  
특별한 예방조치 문구가 없음.

다. 유해.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

물질명	NFPA지수	보건	화재	반응성
1.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핀 증류액 (Distillates,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)		1	1	0
2. 심하게 용제-데왁스ED 잔기성 기름 (Residual oils (petroleum), solvent-		1	1	0
3. 첨가제 혼합물(S1)		1	1	0
4. 첨가제 혼합물(S2)		2	2	0

### 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	CAS번호	함유량(%)
1)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핀 증류액 (Distillates,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)	수화된 증류, 중 파라핀	64742-54-7	65 ~ 70
2) 심하게 용제-데왁스ED 잔기성 기름 (Residual oils (petroleum), solvent-dewaxed)	잔유 (석유)	64742-62-7	30 ~ 35
3) 첨가제 혼합물(S1)	해당없음	분류되지 않음	5 ~ 10
4) 첨가제 혼합물(S2)	해당없음	분류되지 않음	1 ~ 5

### 4. 응급조치 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 :

- 즉시 다량의 흐르는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씻어내며, 자극이 계속되면 전문의의 처방에 따른다.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:

- 가능하면 비누를 사용하여 15분 이상 다량의 물로 씻어내고, 오염된 옷은 세척 및 제거한다.  
증상 발생시에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.

다. 흡입했을 때 :

- 자극, 두통, 구역, 졸음이 발생할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.
- 신선한 공기를 쏘이고, 호흡이 곤란하면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.

라. 먹었을 때 :

- 억지로 구토를 유도하지 말며,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.
- 다량의 물을 마셔 희석시킨다.
- 의식이 없거나 경련이 발생할 경우 아무것도 먹이지 마시오.

마.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/영향 :

- 눈에 대한 영향
  - . 단기간 노출 : 자극
  - . 장기간 노출 : 자극
- 피부에 대한 영향
  - . 단기간 노출 : 자극, 피부장애
  - . 장기간 노출 : 자극, 피부장애
- 흡입시의 영향
  - . 단기간 노출 :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 없음
  - . 장기간 노출 : 폐 이상
- 섭취시의 영향
  - . 단기간 노출 : 설사
  - . 장기간 노출 :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없음.

바.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:

- 억지로 구토를 유도하지 말며,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.

---

## 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---

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소화제

- 적절한 소화제 :
  - 폼, 건조화합분말, 이산화탄소
- 부적절한 소화제 :
  - 고압 물분사
- 대형 화재 시 :
  - 일반적인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미세한 분무로 살수하십시오.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열분해생성물 :
  - 일산화탄소, 유독 탄소화합물, 기타 분해생성물
- 화재 및 폭발 위험 :
  - 경미한 화재 위험이 있음.

다.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:

- 진화시 공기 호흡장비 및 적정소방장비를 이용한다.
- 상황에 따라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 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킨다.
- 물질의 누출을 먼저 중지시키고, 진화를 시도한다.
-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동안 물 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킨다.
- 입출하 또는 보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된 후에도 상당 시간동안 물로 무인 호스 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시킨다.
-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관계인 이외의 접근을 막고, 위험 지역을 격리하면 출입을 금지한다.
-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한다.
- 탱크, 철도 차량 또는 탱크 트럭인 경우 : 대피반경 : 0.8km
- 미세한 물 분무로 다량 살수 할 것.
-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.
- 진화된 후에도 상당 시간동안 물 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.
- 방호 조치된 장소 또는 안전거리가 확보된 곳에서 물을 뿌려야 함.

---

## 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---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:

- 흡입 및 피부 접촉을 피함.
- 오염된 의복은 갈아 입어야 하며 침투되지 않는 재질로 만든 장갑과 안전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.
- 열, 화염,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.
- 발화원을 제거 할 것.
-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 시킬 것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:

- 제품이 토양이나 수원에 흘러 들지 않도록 하고, 선박의 누출에 주의하며 법규 허용량 이상의 오염 시 즉시 해당관청에 신고한다.

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 :

- 누출지역을 차단제나 모래 등으로 차단하고 스키머나 흡착제로 제거한다.
- 폐수는 적절한 폐수처리법으로 처리할 것.

---

## 7. 취급 및 저장방법

---

가. 안전취급요령 :

- 다른 제품과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, 사용하지 않을 때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는 곳이 없도록 밀봉할 것.
- 장시간 피부 접촉을 피하고 취급 후에는 철저히 씻을 것.

나. 안전한 저장 방법(피해야 할 조건 등) :

- 시원하고 환기가 잘 되며 화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.
- 인화성 액체 및 혼합 금지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.

---

## 8.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---

가. 화학물질의 누출 기준, 생물학적 누출기준 등

1)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핀 증류액(Distillates,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)

- 국내 규정 : TWA(가중평균시간) : 자료없음  
STEL(단기간 노출제한) : 자료없음
- ACGIH 규정 : TWA(가중평균시간) : 자료없음  
STEL(단기간 노출제한) : 자료없음
- NIOSH 규정 : TWA(가중평균시간) : 자료없음  
STEL(단기간 노출제한) : 자료없음
- 생물학적 누출기준 : 자료없음

2) 심하게 용제-데왁스ED 잔기성 기름 (Residual oils (petroleum), solvent-dewaxed)

- 국내 규정 : TWA(가중평균시간) : 5mg/m<sup>3</sup>  
STEL(단기간 노출제한) : 10mg/m<sup>3</sup>
- ACGIH 규정 : TWA(가중평균시간) : 5mg/m<sup>3</sup>  
STEL(단기간 노출제한) : 10mg/m<sup>3</sup>
- NIOSH 규정 : TWA(가중평균시간) : 5mg/m<sup>3</sup>  
STEL(단기간 노출제한) : 10mg/m<sup>3</sup>
- 생물학적 누출기준 : 자료없음

3) 첨가제 혼합물(S1)

- 국내 규정 : 해당없음
- ACGIH 규정 : 자료없음
- 생물학적 누출기준 : 자료없음

4) 첨가제 혼합물(S2)

- 국내 규정 : 자료없음
- ACGIH 규정 : 자료없음
- 생물학적 노출기준 : 자료없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 :

- 국소배기, 공정밀폐 환기장치를 설치하시오.
-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오.

다. 개인 보호구 :

○ 호흡기 보호 :

-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("안" 마크)을 필할 것.
-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.
- 호흡보호구는 최소 농도로부터 최대 농도까지 분류됨.
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.

○ 눈 보호 :

- 비산물,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며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하시오.
- 작업장 가까운 장소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시오.

○ 손 보호 :

- 접촉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, PVC, 니트릴 재질등의 내화학성 재질로 만들어진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.

○ 신체 보호 :

- 유출이나 옆지를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불 투과성 고무, 폴리에틸렌, PVC, 니트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안전화, 보호의, 앞치마를 착용하고, 필요시 불침투성 전신 보호 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.

---

## 9. 물리·화학적 특성

---

가. 외관 : 물리적 상태-액체(점성), 색상-갈색

나. 냄새 : 석유계 화합물의 냄새

다. 냄새 역치 : 자료없음

라. pH : 해당 없음

마. 녹는점/어는점 : 자료없음. 상온에서 액상.
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: 330~500℃

사. 인화점 : 240℃ / 측정방법 - C.O.C

아. 증발 속도 : 자료없음

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 : 해당없음.
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 : 자료없음

카. 증기압 : 20℃에서 0.1 Kpa 이하임.

타. 용해도 : 자료 없음

파. 증기밀도 : 자료없음.

하. 비중 : 0.88

거. N-옥탄올/물 분백계수 : 자료없음

너. 자연발화 온도 : 자료없음

더. 분해 온도 : 자료없음

러. 점도 : 15.0cSt(100℃)

머. 분자량 : 혼합물로 자료없음

---

## 10. 안정성 및 반응성

---

가. 화학적 안정성 :

- 상온상압에서 안정, 화재시 자극성, 부식성,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.

나. 유해 반응의 가능성 :

- 중합되지 않음

다. 피해야할 조건(정전기 방전, 충격, 진동 등) :

- 열, 스파크, 불꽃,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할 것.
- 혼합금지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.
- 정전기 방전 피할 것.

라. 피해야할 물질 :

- 산화제, 아민, 가연성 물질

마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:

- 탄소산화물, 일산화탄소, 기타 독성 증기

---

## 11. 독성에 관한 정보

---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호흡기를 통한 흡입 : 경미한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
- 입을 통한 섭취 : 설사를 일으킬 수 있음
- 피부 접촉 : 자극, 피부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
- 눈 접촉 :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.

나.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,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

1)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핀 증류액

(Distillates,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)

- 급성 독성
- 급성 독성
  - 경구 : 구분외 / LD50>5000 mg/kg (rat)
  - 경피 : 구분외 / LD50>5000 mg/kg (rabbit)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: 약한자극 (토끼)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: 비자극 (토끼)
- 호흡기 과민성 : 해당안됨 (guinea pig)
- 피부 과민성 : 해당안됨 (guinea pig)
- 발암성
  - 산업안전보건법 : 미규정
  - 미국 산업안전보건청(OSHA) : 아니오

- 미국 국립독성 계획단(NTP) : 아니오
- 국제 발암성연구소(IARC) : 아니오
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음성 (Ames test)
- 생식독성 : 자료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(1회 노출) : 자료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(반복 노출) : 자료없음
- 흡인유해성 : 자료없음

2) 심하게 용제-데왁스ED 잔기성 기름

(Residual oils (petroleum), solvent-dewaxed)

- 급성 독성
- 급성 독성
  - 경구 : 구분외 / LD50>5000 mg/kg (rat)
  - 경피 : 구분외 / LD50>5000 mg/kg (rabbit)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: 약한자극 (토끼)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: 비자극 (토끼)
- 호흡기 과민성 : 해당안됨 (guinea pig)
- 피부 과민성 : 해당안됨 (guinea pig)
- 발암성
  - 산업안전보건법 : 미규정
  - 미국 산업안전보건청(OSHA) : 아니오
  - 미국 국립독성 계획단(NTP) : 아니오
  - 국제 발암성연구소(IARC) : 아니오
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음성 (Ames test)
- 생식독성 : 자료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(1회 노출) : 자료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(반복 노출) : 자료없음
- 흡인유해성 : 자료없음

3) 첨가제 혼합물(S1)

- 급성 독성
  - 경구 : 구분외 / LD50 > 10,000 mg/kg (rat)
  - 경피 : 구분외 / LD50 > 5,000 mg/kg (rabbit)
  - 흡입 : 자료없음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: 피부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: 눈을 자극함
- 호흡기 과민성 : 자료없음
- 피부 과민성 : 자료없음
- 발암성 : 자료없음
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자료없음
- 생식독성 : 자료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(1회 노출) : 자료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(반복 노출) : 자료없음
- 흡인유해성 : 자료없음

4) 첨가제 혼합물(S2)

- 급성 독성
  - 경구 : 구분5 / LD50 > 3548 mg/kg (rat)
  - 경피 : 구분4 / LD50 > 1452 mg/kg (rabbit)
  - 흡입 : 자료없음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: 피부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: 눈을 자극함
- 호흡기 과민성 : 자료없음
- 피부 과민성 : 자료없음
- 발암성 : 자료없음
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자료없음

- 생식독성 : 자료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(1회 노출) : 자료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(반복 노출) : 자료없음
- 흡인유해성 : 자료없음

다. 독성의 수치적 척도 : 자료없음

##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수생·육생 생태 독성 :

- 지속적으로 수생에 노출시 수생생물에 영향 미칠 수 있음.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 :

- 즉시 분해되지 않으나 OECD 지침에 따른 고유의 생분해성을 지님.

다. 생물 농축성 :

- 자료없음

라. 토양 이동성 :

- 오일 성분이 수중에 부유하다가 토양으로 이동할 수 있음.

마. 기타 유해 영향:

- 자료없음

## 13.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 :

-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거, 제 2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, 제 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, 제 4조 또는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,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.

나. 폐기시 주의사항 :

- 무단 처분이나 소각은 자연생태계에 유해하므로 이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시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됨. 해당 물질을 보관하고 있던 용기도 상기의 폐기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.

## 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유엔 번호 : 해당없음.

나. 유엔 적정 선적명 : 해당없음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해당없음

라. 용기등급 : 해당없음

마. 해양오염물질 : 해당없음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

-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: 해당없음
-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: 해당없음



## 15. 법적 규제현황

### 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- 작업환경측정물질 : 해당없음
- 관리대상유해물질 : 해당없음
- 노출기준설정물질 : 해당없음

### 나.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규제 :

-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핀 증류액 : 해당없음
- 심하게 용제-데왁스ED 잔기성 기름 : 해당없음
- 첨가제혼합물(S1) : 자료없음
- 첨가제혼합물(S2) : 자료없음

### 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위험물 제 4류 제 4석유류

### 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

-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핀 증류액 : 자료없음
- 심하게 용제-데왁스ED 잔기성 기름 : 자료없음
- 첨가제혼합물(S1) : 자료없음
- 첨가제혼합물(S2) : 자료없음

### 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#### 1)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핀 증류액

- EU 분류정보
  - 확정 분류 결과 : 해당없음
  - 위험 문구 : 해당없음
  - 예방조치 문구 : 해당없음
- 미국 관리 정보
  - OSHA 규정 (29CFR1910.119) : 규제대상 아님
  -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 : 규제대상 아님
  -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 : 규제대상 아님
  -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 : 규제대상 아님
  -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 : 규제대상 아님
  - PIC 물질 : 해당없음
  - POPs 물질 : 해당없음

#### 2) 심하게 용제-데왁스ED 잔기성 기름

- EU 분류정보
  - 확정 분류 결과 : 해당없음
  - 위험 문구 : 해당없음
  - 예방조치 문구 : 해당없음
- 미국 관리 정보
  - OSHA 규정 (29CFR1910.119) : 규제대상 아님
  -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 : 규제대상 아님
  -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 : 규제대상 아님
  -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 : 규제대상 아님
  -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 : 규제대상 아님
  - PIC 물질 : 해당없음
  - POPs 물질 : 해당없음

#### 3) 첨가제 혼합물(S1)

- EU 분류정보
  - 확정 분류 결과 : 자료없음
  - 위험 문구 : 자료없음
  - 예방조치 문구 : 자료없음

- 미국 관리 정보
  - OSHA 규정 (29CFR1910.119) : 자료없음
  -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 : 자료없음
  -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 : 자료없음
  -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 : 자료없음
  -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 : 자료없음
  - PIC 물질 : 자료없음
  - POPs 물질 : 자료없음

#### 4) 첨가제 혼합물(S2)

- EU 분류정보
  - 확정 분류 결과 : 자료없음
  - 위험 문구 : 자료없음
  - 예방조치 문구 : 자료없음
- 미국 관리 정보
  - OSHA 규정 (29CFR1910.119) : 자료없음
  -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 : 자료없음
  -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 : 자료없음
  -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 : 자료없음
  -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 : 자료없음
  - PIC 물질 : 자료없음
  - POPs 물질 : 자료없음

---

## 16. 기타 참고사항

---

### 가. 자료의 출처 :

- 한국산업안전공단
- 당사연구소
- KOSHANET (안전보건정보서비스)
- 산업안전보건법
-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(GHS), First revised edition, United Nations
- EINECS(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)
- ACGIH(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Safety and Health)
- IUCLID Dataset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19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기준

나. 최초 작성 일자: 2012.11.30

다.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: 2017-10-26 (3)

### 라. 기타

: 상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술된 내용은 GS 칼텍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, 작성일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었다고 사료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